

## 2. 건물과표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효력범위

토지이외의 지방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99헌가2, '99. 12. 23)에 따라 지난해 일시 적용이 중단된 사례가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부분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전면 정비하고 2000. 2. 3(법률 제6260호)개정 공포하여 소급적용이 되도록 하였다.

### <헌법불합치 결정내용 : 99헌가2, '99. 12. 23>

-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②
    -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심판대상 위임조항에서는 시가표준액의 내용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시가표준액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이는 어떤 사정을 고려하여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취득세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인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과세권자에게 지나치게 광범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지방세법만 가지고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이를 예측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김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친 입법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 <개정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 제111조 제2항 제2호 규정>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